

 행정안전부	보 도 자 료		작성과	회 계 제 도 과
	2017년 8월 1일(화) 석간 (8. 1. 10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담당자	과 장 김연중 사무관 호미영
			연락처	02-2100-3528 02-2100-3541

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 시 '최저가 낙찰제' 폐지한다 **- 행정안전부,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-**

-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납품사업과 관련해 '최저가 낙찰제도'가 폐지된다. 더불어 물품 제조 및 용역 입찰 시 실적이 없는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. 이에 따라 기존 실적은 없지만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창업,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들의 입찰 참여 길이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.
-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는 물품구매 시 '최저가 낙찰제도'를 없애고, 물품제조와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『지방계약법 시행령』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.

<① 물품구매의 최저가 낙찰제 폐지>

- 창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(2.1억 원) 미만의 물품을 구매 시 '최저가 낙찰제도'로 인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했다.
- 이에 따라 2.1억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할 경우 저가 투찰하는

‘최저가 낙찰제도’를 폐지하고,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‘적격심사 낙찰제’로 전환함에 따라 창업 및 소상공인의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.

< 현 행 >			< 개 정 >		
구 분	금액기준	적용제도	구 분	금액기준	적용제도
물품제조	제한 없음	적격심사	물품제조	제한 없음	적격심사
물품구매	2.1억원 이상	적격심사	물품구매	2.1억원 이상	적격심사
	2.1억원 미만	최저가		2.1억원 미만	적격심사

【 예 시 】

- (개선전) A학교 급식재료 최저가 입찰 시 예정가격(예 : 1,000원) 이하 공급업체 낙찰로(예 : 10원, 400원, 600원 등) 급식 부실화
- (개선후)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는 가격(예 : 840원)이상으로 공급 가능

<② 물품제조와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폐지>

□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,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.

-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(2.1억 원) 미만의 경우에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창업 및 소상공인의 입찰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.

※ 일반적인 용역이나 물품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서도 금액에 관계없이 실적제한 입찰을 할 수 없음

< 현 행 >

구 분	특수성	입찰제한
물품	일반	제한 불가능
제조	특수	제한 가능
물품	일반	제한 불가능
구매	특수	제한 불가능
용역	일반	제한 불가능
	특수	제한 가능



< 개 정 >

구 분	특수성	입찰제한
물품	일반	제한 불가능
제조	특수	2.1억 원 미만 제한 불가능
물품	일반	제한 불가능
구매	특수	제한 불가능
용역	일반	제한 불가능
	특수	2.1억 원 미만 제한 불가능

【 예 시 】

- (개선전) B자치단체는 친환경페인트 4천 리터 제조구매 입찰 시 2만리터의 실적을 요구하여 창업 및 소기업의 입찰 기회 박탈
- (개선후)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 및 소기업도 입찰에 참여 가능

□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“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고, 입찰업체의 출혈경쟁 없이 적절한 대가를 보장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말했다.